

부산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3043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원고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C

피 고 1. D

2. E조합(변경전 : F조합)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6. 12.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C의 지분만큼 취소한다. 피고 D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0. 접수 제70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조합와 G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조합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1995. 6. 13. 접수 제23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 9692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0. ‘C는 주식회사 H에게 7,031,026원 및 그 중 6,611,932원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H는 2018. 7.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 D는 C와의 2017. 6. 1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C는 원고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소송 계속 중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530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2. 3. 7.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6. 7.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한편 피고 E조합는 1995. 6. 13.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2394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그 소제기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C가 이를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E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피고 D는 피고 E조합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D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 E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부적법하여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를 대위한 원고의 피고 E조합에 대한 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1.1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22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분의1

- 이 상 -

